[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] : 제 2026-026호
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업무용 사무기기 임차 용역 입찰 공고

"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업무용 사무기기 임차 용역"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9일
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

1. 입찰개요

○ 입찰명 :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업무용 사무기기 임차

○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(3년)

○ 사업예산 : 총 269,990,000원 이내(VAT 포함)

○ 제안서 제출기간

- 사전규격 공개 : 2026. 6. 4.(목) ~ 6. 8.(월)
- 공고기간 : 2026. 6. 9.(화) ~ 6. 22.(월)
- 접수기간 : 2026. 6. 22.(월) 11:00까지(시간 초과시 서류제출 불가)

○ 제안서 제출 방법 : 제출서류 전자(이메일) 접수

○ 접수처 : 경영혁신팀 정재훈 선임행정원(jhjung@compa.re.kr)

○ 문의처

- 사업관련 : 기획조정본부 이지은 연구원 (T:02-6347-5407)
- 접수기간 : 경영혁신팀 정재훈 선임행정원 (T:02-6347-5414)

○ 기타 사항 :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2. 입찰참가 신청서류

○ 서류별 제출방법 및 기한은 제안요청서(RFP) 참조

3. 사업자 선정방법

○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

○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
4. 입찰참가 자격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

○ 제안하는 제품의 기술 및 물품에 대한 공급확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자

○ 이행완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대상 단일실적으로 2억원* 이상(VAT포함)의 전산기기 임대 또는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
* 동일기관에 데스크톱 PC, 모니터, 프린터 등을 임대한 경우 전체 금액 합산을 인정함

○ 공동수급(컨소시엄) 불가 및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(하도급) 불가

* 본 과업은 장비의 일관된 품질 보증, 단일 창구 유지관리 체계, 기관 내 보안성과 정보자산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상 공동수급(컨소시엄)을 불허하며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함

○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
5. 기타사항

○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(인지세 등)은 제안사가 부담함

○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. 이때 제안사(수행책임자)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

○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

○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, 입찰 참가 제외, 낙찰 취소,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

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

○ 제안안내서, 제안요청서,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

○ 관계법령 등의 숙지(근거 :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)

-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
-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,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